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

□ **변경 사유**

- (1) Cp, Cp-E, Cp2, Cp2-F클래스 추가
- (2) 이익 분배 방법 변경 : 전액 분배 → 평가이익 및 매매이익 유보
- (3) 채권 신용등급 하락 관련 조치 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16년 4월 6일

□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클래스 추가	<u>Cp : BC706</u> <u>Cp-E : BC707</u> <u>Cp2 : BC764</u> <u>Cp2-F : BC765</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클래스 추가	<u>Cp : BC706</u> <u>Cp-E : BC707</u> <u>Cp2 : BC764</u> <u>Cp2-F : BC765</u>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추가	<u>2016.4.6. : Cp, Cp-E, Cp2, Cp2-F</u> <u>클래스 추가</u>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16.03.31</u>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클래스 추가	<u>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u> <u>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u> <u>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u> <u>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u>Cp-E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u> <u>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u> <u>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u> <u>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u> <u>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u> <u>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u>

		<p>정한 자 Cp2-F :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p>	<p>채권 신용등급 하락 관련 조치 사항 반영</p>	<p>다)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함</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2) 동일종목 투자</p>	<p>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안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p>	<p>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안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u>기업어음증권</u>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p>

	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용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u>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5) 집합투자증권 투자	나)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u>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u>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클래스 추가	⑥ Cp클래스 : <u>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⑦ Cp-E클래스 : <u>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u> ⑧ Cp2 :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u> ⑨ Cp2-F : <u>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클래스 추가	<u>Cp클래스, Cp-E클래스, Cp2클래스, Cp2-F클래스 추가</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

	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을 수 있습니다. 다만, <u>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u> ※ 매매이익을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시점에 과세하면 전체 투자기간의 매매이익이 수익증권 환매시점에 실현되어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연간 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어 총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매손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서 발생한 매매손실은 투자신탁 내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개정세법 적용으로 인해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수익자는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클래스 추가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및 퇴직연금제도 세제추가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추가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반기 기준으로 갱신	<u>2015. 12. 10.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반기 기준으로 갱신	<u>2015. 12. 10.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반기 기준으로 갱신	<u>2015. 12. 10.기준</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

	<p>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u>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u>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p>	<p>법 개정사항 반영</p>	<p><u>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u></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p>	<p>법 개정사항 반영</p>	<p>⑤ 투자설명서 변경(단, 법 및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u>투자운용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 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u>)</p>